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19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

판 결

사 건	2014가단2036 배당이의
원 고	1. A
	2. B
피 고	1. C
	2. [redacted]군
	3. D
변 론 종 결	2016. 1. 29.
판 결 선 고	2016. 2. 19.

주 문

1.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4. 12. 16.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[1]을 14,461,065원[2]으로, 피고 C에 배당액 108,335원, 피고 [redacted]

1) 원고들은 원고 B에 대한 기존 배당액이 129,176원이라고 주장하나,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B에 대한 추심권자인 피고 D에게 129,176원이 배당된 것을 가리켜 원고 B에게 배당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2) 원고들은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14,590,241원으로 증액할 것을 구하나, 원고 B에 대한 기존 배당액이라고 주장한 129,176원을 제외한 나머지 14,461,065원으로 증액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19

[redacted]군에 대한 배당액 12,157,020원을 각 0원으로,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,324,886원을 129,176원으로[3] 각 경정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[redacted]군 F 다세대주택 [redacted]호, [redacted]호에 있는 원고 A가 소유하는 것으로 지목된 유체동산(이하 '이 사건 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본161호 및 같은 법원 2014본166호로 유체동산 경매절차(이하 '이 사건 경매절차'라 한다)가 진행되었다.

나.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소속 집행관은 이 사건 동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협의배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C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협의배당을 할 수 없게 되어 2014. 11. 7.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년 금 제262호로 매각대금 23,197,919원을 공탁하였다.

다.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E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결과, 배당법원은 2014. 12. 16.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3,183,838원 중 1순위로 피고 [redacted]군에 12,157,020원, 2순위로 피고 C에게 108,335원, 원고 B에 대한 추심권자(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타채892호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)인 피고 D에게 129,176원, 원고 B에 대한 추심권자(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타채921호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)인 피고 D에게 2,195,710원, 원고 B에 대한 추심권자인 원고 A에게 8,593,597원을

3)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,195,710원을 0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나, 피고 D에 대한 기존 배당액 합계가 2,324,886원(= 원고 B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배당받은 129,176원 + 2,195,710원)이므로 그중 위 2,195,71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,176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19

각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(이하 '이 사건 배당표'라 한다)를 작성하였다.

라. 원고들은 2014. 12. 16.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, 2014. 12. 18.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5,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

이 사건 동산은 원고 A가 아니라 원고 B의 소유이므로,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은 위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원고 A에 대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동산 소유자인 원고 B에게 배당되어야 한다.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

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,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 피고 영동군은 이 사건 소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는데, 이하에서는 그와 같은 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.

가. 원고 A 관련

1) 관련 법리

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'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'만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참조).

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19

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하고,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(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2다50270 판결,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다39215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에 대한 판단

원고 A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하고 그 금액만큼 원고 A 자신이 아닌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시킬 것을 구하고 있음이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.

그러나 만약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 A 자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,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. 그러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나. 원고 B 관련

1) 관련 법리

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,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.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,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(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에 대한 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19

원고 B은 이 사건 동산이 원고 A가 아니라 원고 B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은 피고들에 우선하여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.

그러나 원고 B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원고 A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다. 그와 같은 지위에서 제기한 원고 B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,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4. 결 론

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해빈